

원서접수
2023. 9. 11. ~ 9. 15.



SUPER STAR

2024

전주대학교
재외국민
모집요강

Contents

I. 전형일정	1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III. 지원자격	3
IV. 제출서류	6
V. 지원방법	7
VI. 전형방법	7
VII. 전형료	7
VIII. 지원자 유의사항	8
IX.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유의사항	9
* 학교소개 및 교육특성	10



1. 전형일정

구분	기간	장소
원서접수	2023. 9. 11.(월) ~ 9. 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접수 본교 대학본관(3층) 입학지원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전주시 완산구 천암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
합격자발표	2023. 11. 13.(월) 예정	·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문서 등록동의	2023. 12. 18.(월) ~ 12. 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동의」 절차 진행(온라인) ※ 별도의 은행납부 없음
등록기간	2024. 2. 7.(화) ~ 2. 13.(화)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인터넷뱅킹

※ 전형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고)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전공	
인문 콘텐츠 대학	인문사회	신학과경배찬양학과		10명 이내
		영어영문학과 ^{교직}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직}		
		중국어중국학과		
	예체능	역사콘텐츠학과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인문사회	한국어문학창작학부 ^{교직}	웹문예창작 / 한국어문학		
사회 과학 대학	인문 사회	경찰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직}		
		법학과 ^{교직}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교직}		
		행정학과		
경영 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물류무역학과		
	자연과학	회계세무학과		
		IT금융학과		
인문사회	금융보험학과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의과학 대학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예체능	운동처방학과		
	자연과학	재활학과		
환경생명과학과				
공과 대학	공학	건축공학과		
		건축학과(5년제) ^{건축학교육인증}		
		토목환경공학과 ^{ABEEK}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융합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 / 미래에너지공학	
		소방안전공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ABEEK}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 웨어 융합 대학	공학	데이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화 융합 대학	공학	게임콘텐츠학과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영화방송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음악학과 ^{교직}	관현악 / 피아노 / 작곡	
		생활체육학과		
		축구학과		
태권도학과				
문화 관광 대학	인문사회	관광경영학과		
		외식산업조리학과		
	자연과학	패션산업학과		
		한식조리학과 ^{교직}		
	인문사회	호텔경영학과		
계				10명 이내

*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학과별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입학정원은 우리대학 수시모집요강 참조)

**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



Ⅲ. 지원자격

1. 기본 학력요건

-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 2개국(해외)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2.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일수 조건 등 「3. 지원자격 기준」 참고)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일수 조건 등 「3. 지원자격 기준」 참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교육감의 학력심의회위원회를 거쳐 고졸 학력 인정을 받은 자

- ※ 기존의 영주교포의 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자영업, 현지법인,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선교활동, 외국유학연수자) 등은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 가능함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기타 재외국민(유학생)은 지원 불가함

3. 지원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공통 사항	<p>가. 외국 학교의 소재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지역<이데올로기> 등의 특성 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학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2)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로서 해당국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과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등은 제외) <p>나. 「해외근무자」의 세부 지원자격(모든 지원자격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p>다.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모든 지원자격에 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p>라. 「해외재학기간」의 세부 지원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p>마. 「해외체류일수 조건」의 세부 지원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 등과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고, 방학은 포함하여 산정함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p>바. 학생의 재학기간과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이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p> <p>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p> <p>아.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p> <p>자.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p> <p>차.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p> <p>카. 입학허용기간: 고교 졸업학년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p> <p>타.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한 해석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p>	
추가 사항	기타 재외 국민	<p>가. 기타재외국민</p> <p>1) 자영업자, 현지법인, 해외파원 교직원</p> <p>2) 해외선교활동: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본인 자발적 선교 불가, 교회 재단 파송자 가능)</p> <p>3) 외국유학연수자: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인정</p>	
	북한 이탈 주민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p> <p>-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p> <p>-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단, 국외 소재 고교는 초·중·고 12학년제 이상 국가)</p> <p>※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국내 검정고시 인정함</p>	



IV. 제출서류

1.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거나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처>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 아포스티유 확인 전용 상담전화: 02-2100-7500

2. 제출서류 중 외국어(영문 제외)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3.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번호	구분	해외 근무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기존의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등 해당)	기타 재외국민	북한 이탈 주민
1	입학원서	○	○	○	○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4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	
5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	○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	○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	○	
8	여권(신분증) 사본(부모, 학생)	○	○	○	
9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	○	○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1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1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보호담당관발급) 및 학력증명서(교육감 학력심의회위원회)				○
13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해당자)
14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15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16	해외 세금납부증명서(자영업자)			해당자	
17	해외파견 선교사파견사실확인서·기간명시			해당자	
18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선택사항			



V. 지원방법

1.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부서류의 경우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대학에서 원본대조를 받은 후 반환받을 수 있음
2. 우리대학은 해당 전형(재외국민)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여러 학과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원서 접수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총점	비고
	서류평가		
전 학과	100%	200점	평가위원 2명

- (1) 서류평가 방법: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종합정성 평가 진행하며, 평가위원 2명이 개별 평가 진행 후 합산
- (2) 평가서류: 성적증명서, 활동증빙서류(선택/[별첨 1] 참고)
- (3) 총점 120점 미만 시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VII.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비고
재외국민	30,000원	-

-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전형료 잔액은 전형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비례하여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할 수 있음(단, 반환해야 할 원 금액에서 금융회사 전산망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 이용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단, 학교 직접 방문의 경우 제외))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 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지하지 않고 우리 대학 입학홈페이지(iphakjj.ac.kr)에 게시 공고하므로 각 지원자는 항상 공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2.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작성은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의 취소 등의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3. 지원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원서접수 및 전형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본교가 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따라야 함. 지원자의 착오 및 전형절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4. 신체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나 색맹, 색약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는 대학 재학 중 실험 실습이나 졸업 후 전공분야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학과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5.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입력(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생의 책임이므로 모든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함
6.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자는 본교의 설립목적과 기독교 이념에 따라 개설된 채플과 성경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7.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질병,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음
8. 개인별 입학성적은 학사관리 목적 이외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
9. 수험생이 입학원서를 접수시키면, 입학원서에 기재된 수험생의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 및 입학관리, 학사관리, 홍보, 전적학교 학력조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우리대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과실 및 입학 시기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11. 합격,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가.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나. 서류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다.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라.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마. 통신두절로 인하여 충원합격 통보가 불가능한 자
 - 바. 당해 학년도 입학 전까지 졸업하지 못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12.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 관련 법령 및 우리대학에서 별도로 정한 대학입학전형관리지침이나 대학입학전형관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IX.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유의사항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추가)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자에 수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 접수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입학이 무효됨)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4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함(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지원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타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음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 대학별 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학교소개 및 교육특성

★ 학생생활관(기숙사)

1 시설개요

구분	스타타워	스타홈	스타빌	스타누리	비고
규모	지하1층, 지상18층	지상 4층	지하1층, 지상5층	-	-
실구성	1, 2, 4인실	1, 2인실	1, 2인실	-	-
실수	445실	149실	295실	889실	1,778실
수용인원	970명	298명	590명	1,858실	3,716명
부대시설	편의점, 카페, 식당, 세탁실, 빨래방, 다목적실, 세미나실, 독서실 등				

2 모집단위 및 기간

모집단위	기간	비고
연간 입사단위	51주(3월초 ~ 다음년도 2월 3주차)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학기 입사단위	16주(3월초 ~ 6월 3주차)	

3 입사자 선발기준

- 신입생: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이 선발함(단, 신청자가 많을 시 거주지 거리에 따라 선발)
- 신입생(2학기), 재학생: 거주지 지역 제한 없이 선발함(단, 신청자가 많을 시 성적 및 거주지 거리에 따라 선발)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전주대인포털(fresh.jj.ac.kr)에서 예치금 「등록동의」(등록금 납부) 후 신청 가능함

5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startower.jj.ac.kr) 참조

6 문의처

- 스타타워 운영사무실 : Tel. 063)239-5500~2 Fax. 063)239-5506
- 스타홈/빌 : Tel. 063)239-5520~2 Fax. 063)239-5506

★ 통학버스 운행

본교에서는 시내·외 지역 거주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나 지역은 이용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전북지역			
운행지역	운행비	운행지역	운행비
전주시내	120,000원	정읍	370,000원
		군산	450,000원
김제	280,000원	익산	310,000원

※ 운행지역 및 운행비는 2023학년도 1학기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전주대학교(063-220-2819, 2163)

서울지역				
구분	출발시간			비 고
전주대(정문) → 서울(남부터미널)	08:00	12:40	17:00	· 1일 왕복 12회 운행 · 토요일, 일요일 포함 · 소요시간: 2시간 40분 ※ 출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09:10	13:40	17:40	
	10:20	14:40	18:20	
	11:30	15:40	19:30	
서울(남부터미널) → 전주대(정문)	06:20	12:20	16:35	
	07:35	13:40	17:35	
	09:10	14:35	18:35	
	10:50	15:35	19:40	

※ 노선은 특이상황(업체 사정, 감염병 사례 등) 발생으로 인하여 운행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전주대학교(063-220-2480) / 전북고속(063-270-1700) / 호남고속(063-211-7852)

전주 시내버스(신설)		
구분	운행 노선	비 고
전주대캠퍼스 ↔ 전주대캠퍼스 (전주대 ~ 전주시내 ~ 전주대)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 신설 및 운영 (2022년 2월 부 개시)	· 노선별 1일 100회 운행 · 배차간격: 10분

※ 시내버스 노선(전주대캠퍼스 등) 상세내용은 전주시내버스 공식 홈페이지 참조(<https://jeonju.go.kr/bus/>)

★ 해외 파견 프로그램

- 본교에서는 외국대학 및 교육기관에서의 장단기 언어연수, 현장학습, 교환학생, 복수학위, 해외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1인 1개 이상의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켜 개인의 발전과 취업은 물론,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가. 해외 단기 어학연수 파견 프로그램

국가	대학명	파견기간	장학금	학점인정
일본	구루메대학	4주 이내(동계·하계 방학)	최대 150만원	2학점
중국	북경어언대학	4주 이내(동계·하계 방학)	최대 150만원	2학점
캐나다	Seneca College	4주 이내(동계·하계 방학)	200만원	3학점
	Niagara College	4주 이내(동계·하계 방학)	200만원	3학점
필리핀	Bataan Peninsula University	4주 이내(동계·하계 방학)	100만원	3학점

※ 연간 파견인원: 80명 내외

※ 상기 단기 어학연수 파견대학, 파견인원 및 장학금 등은 본교 사정 및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가	대학명	파견기간	장학금	학점인정
중국	상해대학, 산서대학 등 8개 대학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100만원/학기	자유선택 과목 학점인정 · 1학기 : 최대 16학점 · 1년 : 최대 32학점
일본	국립에히메대학, 삿포로대학 등 5개 대학			
캐나다	Seneca College	1개 학기	300만원/학기	전공필수 과목 · 1학기 : 최대 16학점

※ 연간 파견인원: 40명 내외

※ 상기 파견대학 및 파견인원은 본교 사정 및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해외 자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국가	연수대학	프로그램 특징
일본	삿포로대학	· 수학방법: 전주대 3년, 외국대학 2년 · 전주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증서를 복수로 수여 · 복수학위 파견기간 전주대학교 1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야마나시에이와대학	

★ 주요 학사제도

가. 전과(학생이 학과 소속을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제도)

모집인원	신청자격	제한범위
학과별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	1) 2학년 전과: 2학기 이상 이수 2) 3학년 전과: 4학기 이상 이수 3) 4학년 전과: 6학기 이상 이수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작업치료학과는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2학년 1학기에 전과가 가능

나. 복수전공, 부전공(주전공 이외 타전공을 취득하는 제도)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제도	1. 이수기준: 최소전공(전필, 전선)학점 이수 2. 신청자격: 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신청기간: 매학기 1~2주, 13~14주	1. 이수기준: 전공학점 중 21학점 이수 2. 신청자격: 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신청기간: 매학기 1~2주, 13~14주

※ 단, 보건계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관리학과, 작업치료학과)는 복수(부)전공이 불가함

다. 연계전공, 융합전공(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 융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분	연계전공	융합전공
전공 제도	1. 전공내역: 공공인재, 보육학, 벤처창업, 중국비즈니스 등 7개 전공 2. 신청자격: 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신청기간: 매학기 1~2주, 12~13주	1. 전공내역: 국민연금, 국토정보학, 대물차량손해사정, 보컬퍼포먼스 등 19개 전공 2. 신청자격: 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3. 신청기간: 매학기 1~2주, 12~13주

라. 조기졸업(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제도)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기 졸업	·5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기 등록한 자로서 112학점 이상 (간호학과는 119학점)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 4.1이상	·학기 초 2주 이내 조기졸업신청서 제출

※ 학사제도는 규정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군단(ROTC, 학군사관후보생)

1.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인 남·녀
- 대상: 남·여학생(1, 2 학년) ※ 5년제 학과 2, 3학년
- 선발시험: 1차(필기고사), 2차(면접평가, 한국사인증, 체력인증, 신체검사, 신원조회)
- 시기: 원서접수(3~4월), 필기고사(5월), 면접평가/체력검정/신체검사(6월~9월), 최종합격(10월)

2. 학생군사교육단 입단 시 혜택

- 재학 중 성적우수자는 육군 및 ROTC 장학금, 학군단 동문회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됨
-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에 의거 장교후보생의 혜택 및 특전
 - ※ 전적지답사(전, 후방 주요 전사적지 및 군부대), 인성수련회, 백마무제(ROTC 후보생축제), 3학년 후보생(국내 전사적지 문화탐방), 4학년 후보생(해외 전사적지 문화탐방) 방문기회 제공
- 2년간의 사관후보생 생활을 거쳐 명예로운 장교로(소위) 임관하게 됨(장교 중 최 단기 복무)
 - ※ 임관 후에는 공무원(7급)의 안정된 직장과 급여지급 및 20년 이상 복무시 군인연금 혜택 등, 다양한 복지 혜택

3. 선발방법

- 남학생은 대학별 선발 정원내 70%를 1학년 때 선발하고, 나머지 30%를 2학년 때 선발
 - ※ 1학년은 대학내 경쟁, 2학년은 전라남·북도 통합 경쟁으로 1학년 때 지원이 유리
- 여학생은 전라남·북도 통합 선발 정원내 1학년 때 50%, 2학년 때 50% 선발
- 문의처: 전주대학교 학군단 행정실 063-220-2472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우리대학에서는 '진로계획수립', '경력개발', '취업실전' 등 슈퍼스타를 키우기 위한 단계별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취업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각종 취업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생, 졸업생들의 취업알선 및 진로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구분		운영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직무 역량 강화	디지털 일자리 역량강화	IT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딩 입문 교육, IT Plus 교육 ○ 컴퓨터활용능력(필기, 실기) ○ Adobe 자격증반(포토샵&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프로) ○ GTA 1급 포토샵, 정보처리기사(필기, 실기)
	구직 역량 강화	취업 기본역량	취업기초역량 향상 교육 (자기소개서,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취업기초능력교육 ○ 자기소개서 교육(일반형, 공기업) ○ 면접 이미지메이킹 교육 ○ 실전 면접교육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기업별/학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및 대기업 준비반(일반형, 기업타겟형)
	산업현장연계		산업현장 연계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탐방 ○ 채용 박람회 및 설명회 ○ Dream-JOB 인재풀

※ **StarT Program: 포인트 장학금으로 누리는 개인경력관리 프로그램**

- "Superstar"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실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도전정신(challenge), 능력개발(competence), 공동체의식(community)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내·외 활동의 참여 정도 및 성과에 따라 인증 포인트(certificationpoint: CP)와 장학 포인트(scholarship point: SP)를 부여하고, 개인별 합산 점수에 따라 인증서 수여,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함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수요자 중심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단과대학별로 배치되어 있는 학사지도사(CA)가 개별지도·관리

1) 도전정신 함양 활동(예시)

구분	활동 사항	점수 구분	인정 기준	평가 방법	최대 점수
도전 해외 문화 탐방	팀별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공모 트랙 (Catch the World)	CP	CP 10점 (신청자, 선발된 자 제외)	신청서심사	100
			CP 10~30점 (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라)	결과보고서	
교양 증진 활동	신문, 잡지, 기관소식지 등 게재 활동	CP	CP 10점(건당)	최대 CP 50점 결과보고서	100
개인 및 팀 프로젝트	교내·외 경진대회, 공모전 등 참가	CP	CP 10점 (단과대학경진대회참가자 제외)	참가확인	100
		SP	SP 30점	수상확인증	100

2) 능력개발 활동(예시)

구 분	활 동 사 항	점수 구분	인 정 기 준	평 가 방 법	최대 점수
자격증 취득활동	-각종 전공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인정 -자격증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공인, 민간등록으로 분류 차등점수 인정함 -구체적인 자격증의 분류 및 점수 인정은 StarT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상세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RP	SP 70점(국가공인자격) SP 50점(민간공인자격) SP 30점(민간등록자격) * SRP는 1점당 3,000원이며, 민간등록자격은 3개까지만 취득 가능함	자격증사본	400
외국어 학습활동	-공인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의 점수 획득 시 등급별 점수 부여 -TOEIC, TOEFL, TEPS, IELTS, JPT, JLTP, HSK, CPT 등 외국어 시험 점수 제출 -매월점수, 매월지급 (시험 성적 등급 향상 시) ※ 상세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RP	8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정 (ex) 토익 860점 이상(1등급) 600,000원 토익 800점 이상(2등급) 450,000원	성적표사본	

3) 공동체의식 함양 활동

구 분	활 동 사 항	점수 구분	인 정 기 준	평 가 방 법	최대 점수
리더십 개발 활동	총학생회 임원 활동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 간부 활동)	CP	CP 20점(1학기)	확인서	50
	단과대학 및 학과 임원 활동 멘토링 활동(멘토-멘티) (개강 후 1개월 내 CA실 신청)	CP			
사회 봉사	사회복지시설, 행정기관, 학교, 농어촌 봉사	CP	CP 10점 (학점당 2014학번까지만 해당) 시간 당 CP 1점 (1일 최대 8점)	참여신청서 및 기관확인서	150
헌혈 활동	헌혈 활동(전혈, 성분헌혈)	CP	CP 20점(전혈) CP 10점(성분헌혈)		
교내자원봉사	대학 내 자원봉사, 행사보조 등	CP	CP 5점 (1일당, 시간당 1점) 최대 CP 30점		
기부 활동	복지단체 금전기부활동	CP	CP 20점(1년)		
	복지단체 물품기부활동	CP			
	헌옷기부활동	CP	CP 3점(개당) 최대 CP 30점		

진로·취업 상담: 취업상담전문가의 1:1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 학사지도사(CA): 각 단과대학에 위치한 진로 및 대학생활 관련 전문 상담사들로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1:1 밀착 상담 가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취업지원관: 진로취업지원실과 대학일자리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취업 전문 상담가로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기업현장체험 프로그램: 직장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경력 개발 및 직무교육 완성

- 취업·채용 설명회, 취업박람회, 재학생 직무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체험 및 구직 기회 제공

※ 기타 자세한 취업 및 장학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시관련업무 담당부서 및 안내 전화

업무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신·편입학 업무	입학지원실	(063) 220-2700
학생부종합전형 업무	입학사정팀	(063) 220-2701
등록금 수납	재무지원실	(063) 220-2152~4
장학금, 학자금 대출, 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실	(063) 220-2162~4
수강신청, 복수전공, 교직이수	학사지원실	(063) 220-2133~4
교육비 납입증명서, 휴·복학, 증명발급	학생서비스센터	(063) 220-2135~6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 교육 지원 대상」 해당 여부는 연령조건(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및 학력조건(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교학력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063)220-2982로 문의 요망

전주대학교 202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① 구분	해외근무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기타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 ()										
② 지 원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출신고교전화번호													
	출신고교주소													
③ 지 원 사 항	지원학과							대학	학과 (전공)					
④ 전 형 기 간 중 연 락 처	지원자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자택					
			휴대폰						휴대폰					
	보호자	휴대폰		기타연락처 1			기타연락처 2							
⑤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본인 및 보호자 계좌만 가능			예금주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3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지 원 자 (인)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⑥ 전 형 료 납 부 필 증 첨 부 (본교발행)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div>														
⑦ 전주대학교 수험번호														

[별첨 1]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수험번호		성명	
------	--	----	--

[작성가이드]

1. 본 서식은 반드시 학교 및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등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필수, 영문이 아닐 경우 한글번역본 첨부)
2. 활동구분: 리더십, 동아리, 어학, 자치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3. 활동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활동에 참여한 시기
4. 활동내용: 1개 활동 당 100자 이내(각 연번에 1개 활동, 최대 10개 이내 활동 작성 가능)
5. 증빙자료: 각 활동별 A4용지 기준 **3페이지** 이내 제출(제출한 증빙자료 중 초과한 페이지부터는 평가 미반영)

연번	활동 구분	활동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활동내용	활동(발행)기관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1.> (앞쪽)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 (Purpose)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전주대학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063-220-2700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전주대학교 입학 관계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 Applicant Name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303 Chonjam-ro, Wansan-gu, Jeonju, 55069, Republic of Korea

홈페이지 www.jj.ac.kr / 입학홈페이지 iphak.jj.ac.kr

입학상담전화 : 063-220-2700, FAX : 063-220-2658